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59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정오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박재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인천)2024나1813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명칭 생략) 도시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197명으로 구성된 상가조합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아 그 처분 등을 통하여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피고 임원의 선임 및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조합총회 의결사항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장, 총무이사,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 조합원들 중 79명은 2023. 2. 2.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1에게 현 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 건, 신임 조합장 및 임원진 선임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위 79명의 조합원들은 법원에 위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2023. 5. 16. 인천지방법원 2023비합512호로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허가결정에 기하여 2023. 6. 9.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서면결의자를 포함하여 피고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1호 안건(현 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 건) 및 제2호 안건(신임 조합장 및 임원진 선임 건)을 각 가결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제1호 안건은 피고의 조합장, 총무이사,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총 7명의 원고들 등을 일괄하여 해임하는 것이었고, 제2호 안건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 당시 후보자로 통지된 9명을 일괄하여 피고의 조합장, 총무이사,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 당시 현장 출석 조합원은 제1호 안건 및 제2호 안건에 대한 각 찬반만을 표시할 수 있었을 뿐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는 찬반을 표시할 수 없었고, 이는 서면결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피고 정관상 서면결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결의자들을 출석한 것으로 계산한 것은 민법 제73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고, "코로나 기타 전염병으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결의로써 총회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피고 정관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면결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일괄 결의로 인해 피고 조합원들의 결의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비법인사단의 기관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사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를 두는 민주적 구성원리에 부합하는 방식, 즉 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기관인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개별 임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 개별 임원에 관한 단체적 의사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각각의 단체적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원들은 개별 임원에 관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자유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일괄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의(이하 '일괄 결의'라 한다)에는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사원들의 의사결정 및 표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임원별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들이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위 일괄 결의 방식을 채택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결의 방식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총회의 일괄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는 일괄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일괄 결의의 필요성, 일괄 결의의 사전 공지 여부 및 일괄 결의 당시 사원들의 이의 제기 여부, 일괄 결의에 따른 표결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괄 결의 방식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피고의 정관 등에서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곧바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에 제1호 안건(현 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 건) 및 제2호 안건(신임 조합장 및 임원진 선임 건)을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가결한 데에는 하자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각 결의가 무효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원들 중 79명은 2023. 2. 2.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1에게 현 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 건, 신임 조합장 및 임원진 선임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소집요구 당시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는 원고들로 구성된 조합장 등 임원진 전체를 공통된 사유로 일괄하여 해임 후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소집요구 및 이 사건 임시총회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로 선임된 피고의 신임 임원진 9명 중 8명은 법원에 위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결의 당시 이미 기존 임원진의 해임과 신임 임원진의 선임에 대한 각 일괄 결의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고 일괄 결의의 필요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2)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은 2023. 5. 22.경 피고 조합원들에게 통지되었는데, 위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제1호 안건 및 제2호 안건 각각에 대하여 일괄 결의 방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기존 임원진의 공통된 해임사유 및 피고 정관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소집통지 이후 2023. 6. 9.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일괄 결의 방식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 당시 조합장이었던 원고 1은 현장에 출석하여 발언기회를 부여받아 원고들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일괄 결의 방식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하지 않았다. 원고 1 외에도 원고 3, 원고 6이 현장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였으나, 이들 또한 일괄 결의 방식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괄 결의 방식에 따른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누구도 결의 완료 시까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3)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는 총 조합원 197명의 약 72.1%에 달하는 142명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약 97.9%에 달하는 13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피고 정관상 임원의 선임 및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크게 상회한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들이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러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비법인사단 총회의 결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